

2017 세법노트북 소득세법(4판, 1쇄) (주록)(2월 10일)

- 주민규 저

2017. 2. 3. 소득세법 시행령 확정내용을 반영하여 2017 세법노트북 소득세법(4판, 1쇄)의 주록을 올립니다.(일부오타 수정 내용 포함)

본 교재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 2017. 2. 10. 저자 드림

page	행	종 전	수 정
12	상 3	2013.2.15.~ 2017.2. . 가입분 2017.2. . 이후 가입분	2013.2.15.~ 2017.3.31. 가입분 2017.4.1.부터 가입분
62	상 12	(2)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지 아니한다.	(2)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. 다만,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74	상 3	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*일 것	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사업소득(부동산임대업 제외)에서 발생한 결손금*일 것
	상 9	[주의] 조특령(제2조 ①) 개정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. 따라서 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어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하다. 개정	[주의] 조특령(제2조 ①) 개정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.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어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하다. 개정
	상 10	결손금 감소시 세액의 추정	환급세액의 추정
108	하 6	종합소득 산출세액 : Max[①, ②]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(종합소득 과세표준-부동산 매매차익*1)× 기본세율+(부동산 매매차익*1) ¹ - 양도소득기본공제*2)×양도소득세율	종합소득 산출세액 : Max[①, ②] ① 일반산출세액 : 종합소득 과세표준×기본세율 ② 비교산출세액 : (종합소득 과세표준 - 부동산 매매차익*1)×기본세율+(부동산 매매차익*1) ¹ - 장기보유특별공제 - 양도소득기본공제*2)×양도소득세율
	하 3	*1) 부동산 매매차익=매매가액-필요경비(취득가액·자본적 지출·양도비용) - 장기보유특별공제	*1) 부동산 매매차익=매매가액-필요경비(취득가액·자본적 지출·양도비용)
142	하 1	내용 추가	☞ 공동상속주택 특례 : 공동상속주택*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,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 * 공동상속주택 :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,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. 개정 (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)

P53 수정사항

사례 건강보험료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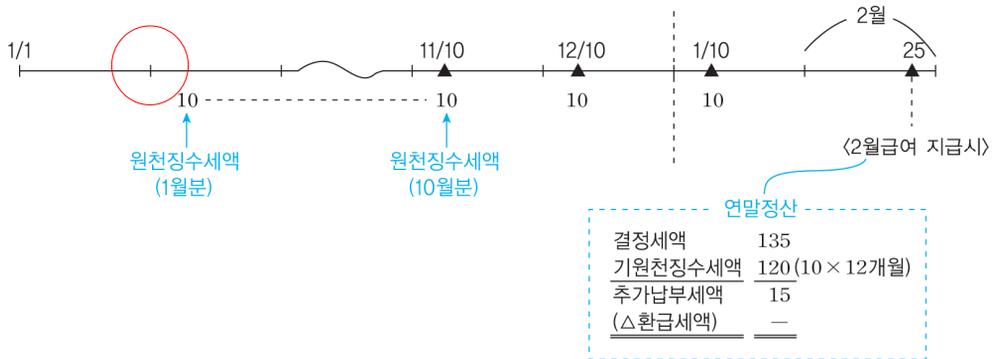
건강보험료 등 100	총급여액(if 급여 1,000)	소득공제(보험료공제)
회사부담 50(비과세) 근로자부담 50(근로소득) ... 총급여액에 이미 포함됨	1,000	50
회사부담 100 { 50(비과세) 50(근로소득) ... 총급여액에 추가 포함 근로자부담 0	1,000 + 50 = 1,050	50

추가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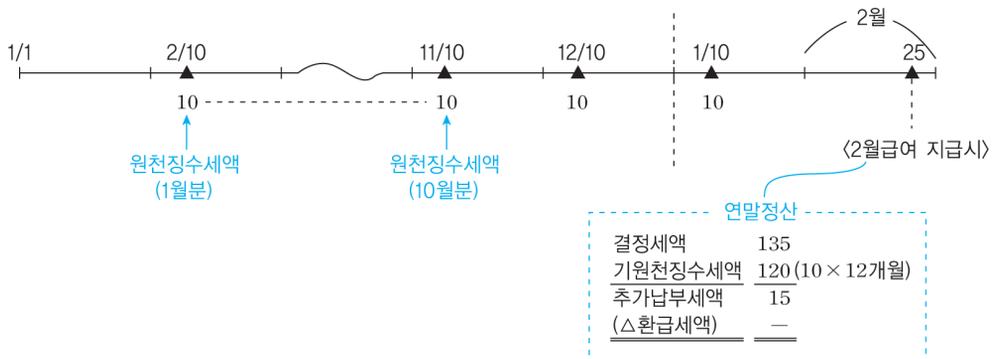
정리3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 ... 근로소득×(∵ 추후 수령시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)

P57 수정사항

사례2 상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... 급여일(매월 25일)



사례2 상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... 급여일(매월 25일)



P76 수정사항

6. 기타소득의 과세방법

구 분	대 상	원천징수
(1) 무조건 분리과세	① 복권당첨소득	소득금액의 20% (3억원초과분 30%)
	② 승마투표권, 승자투표권,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	
	③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	
	④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	
	⑤ 서화·골동품의 양도소득	
(2) 무조건 종합과세	뇌물·알선수재·배임수재로 인한 금품	×
	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	×
(3) 조건부과세	위 외의 기타소득	소득금액의 20%



6. 기타소득의 과세방법

구 분	대 상	원천징수
(1) 무조건 분리과세	① 복권당첨소득	소득금액의 20% (3억원초과분 30%)
	② 승마투표권, 승자투표권,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	
	③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	
	④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	
	⑤ 서화·골동품의 양도소득	
(2) 무조건 종합과세	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(비과세 제외) 개정	소득금액의 20%
	뇌물·알선수재·배임수재로 인한 금품	×
	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	×
(3) 조건부과세	위 외의 기타소득	소득금액의 20%

P77 수정사항

[경우 1] ①~⑤의 소득만 있는 경우(종합소득 한계세율 38%)

종합	{	뇌물 등	: 1,700,000-0	=1,700,000	
		계약금 대체액	: 2,500,000-0	=2,500,000	} 3백만원 이하
		조건부 과세	: 1,500,000-1,200,000 =	300,000	

⇒ 기타소득금액(종합과세) : 4,200,000 ↳ 분리과세 선택

if) 종합소득 한계세율이 15%인 경우 : 300,000원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(∵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0%)

[경우 2] ①~⑥의 소득이 있는 경우(종합소득 한계세율 38%)

종합	{	뇌물 등	: 1,700,000-0	=1,700,000	
		계약금 대체액	: 2,500,000-0	=2,500,000	} 3백만원 이하



[경우 1] ①~⑤의 소득만 있는 경우(종합소득 한계세율 38%)

종합	{	발명보상금			
		뇌물 등	: 1,700,000-0	=1,700,000	
		계약금 대체액	: 2,500,000-0	=2,500,000	} 3백만원 이하
조건부 과세	: 1,500,000-1,200,000 =	300,000			

⇒ 기타소득금액(종합과세) : 4,200,000 ↳ 분리과세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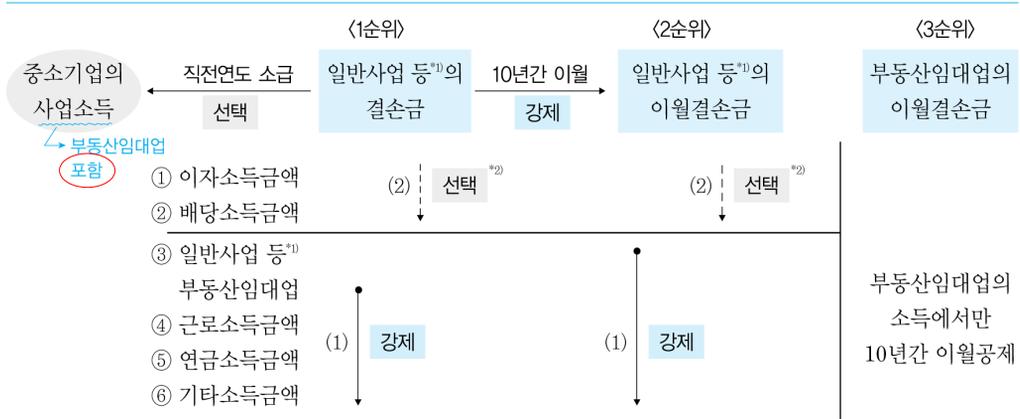
if) 종합소득 한계세율이 15%인 경우 : 300,000원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(∵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0%)

[경우 2] ①~⑥의 소득이 있는 경우(종합소득 한계세율 38%)

종합	{	발명보상금			
		뇌물 등	: 1,700,000-0	=1,700,000	
		계약금 대체액	: 2,500,000-0	=2,500,000	} 3백만원 이하

P82 수정사항

☛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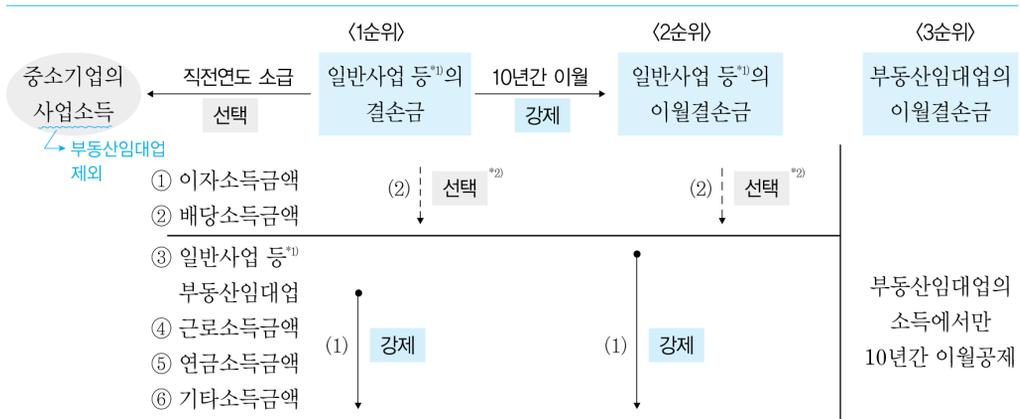


*1) 일반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

*2) 14%(9%)세율 적용분에서 공제불가(×), 기본세율 적용분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 선택가능(○)



☛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요약



*1) 일반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

*2) 14%(9%)세율 적용분에서 공제불가(×), 기본세율 적용분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 선택가능(○)

P107 수정사항

1. 과세표준

조건부·종합	원천	기본t	
이 $3^{25\%} + 20 = 23$			23(이자소득금액)
× 4종			
○ $\frac{18}{45} - \frac{20}{25} = \frac{18}{25} \times 11\% = 1.98$			23.98
출 9			32.98 (배당소득금액)
			55.98
			5 사업소득금액
			60.98 종합소득금액
			(-) 6 종합소득공제
			54.98 과세표준

2. 산출세액 : 7.89

Max {

① 일반 : $20 \times 14\% + (54.98 - 20) \times \text{기본t} = 6.967$

② 비교 : Max {

a. $3 \times 25\% + 42 \times 14\% + (9 + 5 - 6) \times \text{기본t} = 7.11$

b. $6.63 + 9 \times 14\% + (8 - 9) \times \text{기본t} = 7.89$

$\Delta 1 \rightarrow 0$



1. 과세표준

조건부·종합	원천	기본t	
이 $3^{25\%} + 20 = 23$			23(이자소득금액)
× 4종			
○ $\frac{18}{45} - \frac{20}{25} = \frac{18}{25} \times 11\% = 1.98$			23.98
출 9			32.98 (배당소득금액)
			55.98
			5 사업소득금액
			60.98 종합소득금액
			(-) 6 종합소득공제
			54.98 과세표준

2. 산출세액 : 7.89

Max {

① 일반 : $20 \times 14\% + (54.98 - 20) \times \text{기본t} = 6.967$

② 비교 : Max {

a. $3 \times 25\% + 42 \times 14\% + (9 + 5 - 6) \times \text{기본t} = 7.11$

b. $6.63 + 9 \times 14\% + (5 - 6) \times \text{기본t} = 7.89$

$\Delta 1 \rightarrow 0$

P117 수정사항

사례 교육비세액공제

① 근로자 본인	: 대학원 등록금	10,000,000원	내용 추가
② 장 남(21세, 소득없음)	: 대학교 등록금	9,500,000원	
③ 차 남(18세, 소득없음)	: 고등학교 교육비	3,000,000원(학교장학금 500,000원 수령)	
④ 삼 남(15세, 소득없음)	: 중학교 교육비	2,600,000원(교복구입비 600,000원 포함)	
⑤ 배우자(43세, 소득없음)	: 대학원 교육비	5,000,000원	내용 추가
⑤ 모 친(65세, 소득없음)	: 대학교 등록금	4,000,000원	

• 교육비세액공제

$$\begin{aligned} \text{① 공제대상} &: 10,000,000 + 9,000,000(\text{한도}) + (3,000,000 - 500,000) \\ &+ (2,600,000 - 100,000) = 24,000,000 \end{aligned}$$

↙ 비과세
↘ 교복구입비 50만원 한도

$$\text{② 세액공제} : 24,000,000 \times 15\% = 3,600,000$$

※ 배우자 대학원 교육비(×), 모친의 대학등록금(×)



사례 교육비세액공제

① 근로자 본인	: 대학원 등록금	10,000,000원, 대학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2,000,000원
② 장 남(21세, 소득없음)	: 대학교 등록금	9,500,000원
③ 차 남(18세, 소득없음)	: 고등학교 교육비	3,000,000원(학교장학금 500,000원 수령)
④ 삼 남(15세, 소득없음)	: 중학교 교육비	2,600,000원(교복구입비 600,000원 포함)
⑤ 배우자(43세, 소득없음)	: 대학원 교육비	5,000,000원, 대학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1,500,000원
⑥ 모 친(65세, 소득없음)	: 대학교 등록금	4,000,000원

• 교육비세액공제

$$\begin{aligned} \text{① 공제대상} &: 10,000,000 + 2,000,000 + 9,000,000(\text{한도}) + (3,000,000 - 500,000) \\ &+ (2,600,000 - 100,000) = 26,000,000 \end{aligned}$$

↙ 비과세
↘ 교복구입비 50만원 한도

$$\text{② 세액공제} : 26,000,000 \times 15\% = 3,900,000$$

※ 배우자 대학원 교육비(×), 근로자 본인 외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(×), 모친의 대학등록금(×)

P128 수정사항

조특법상 세액공제	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	○	○(10만원 이하분) ^{*3)}	○
	월세세액공제	○	×	×
	고배당기업주식 배당세액공제	×	×	×(배당소득자○)
	의료비세액공제, 교육비세액공제	×	×(성실사업자 등○) ^{*4)}	×



조특법상 세액공제	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	○	○(10만원 이하분) ^{*3)}	○
	혼인세액공제	○	○	○
	월세세액공제	○	×	×
	고배당기업주식 배당세액공제	×	×	×(배당소득자○)
	의료비세액공제, 교육비세액공제	×	×(성실사업자 등○) ^{*4)}	×